

# 산지관리 정보화 및 산지구분타당성조사

2007. 10. 26



산림청  
KOREA FOREST SERVICE

I. 산지구분 및 타당성조사 개요

II. 예상되는 주요쟁점 및 해결방안 검토

III. 도면정비 후 기대효과

IV. 향후 추진계획



# 1. 산지구분 및 타당성조사 개요

## 산지 구분 및 관리체계

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 산지로 구분 [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]



**산지면적 6,452천ha**  
**[전국토의 64%]**

**보전산지**  
**[4,977천 ha, 77%]**

**준보전산지**  
**[1,475천ha, 23%]**

**임업용산지**

❖ 3,548천ha, 55%

**공익용산지**

❖ 1,429천ha, 22%

요존국유림  
채종림  
시험림  
임업진흥권역

보안림, 자연공원  
자연휴양림, 사방지  
문화재보호구역  
개발제한구역  
백두대간지역 등

**보전산지**  
**이외의 산지**

**산림청장은 산지구분에 따라 전국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은 명시한 산지구분도를 작성·고시 ( 법 제4조제2항)**

## 산지구분 변천사

-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용지 확보(절대, 상대임지) ----- 1969년
- 도시, 산업화의 급속한 진행 대응(보전, 준보전임지) ----- 1985년
- 변동된 법정용도지역 일제 정비(보전, 준보전임지) ----- 1991년
- 국토 균형발전, 산지구분체계재편(생산, 공익, 준보전임지) - 1997년
- 산지관리법 제정(임업용, 공익용, 준보전산지) ----- 2003년
-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시기 도래 ----- 2007년

## 산지구분타당성조사

### 법적 근거

- 산지관리법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
  - ✓ 산림청장은 10년마다 산지구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
  - ✓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결과를 산지구분도 작성에 반영

###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검토사항

- 지형, 입지, 보전 또는 이용가능성 등 산지의 특성 반영 여부
- 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, 결정된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반영 여부
- 산지관리의 정책방향, 산지이용 수요 전망 및 사회,경제적 여건 변화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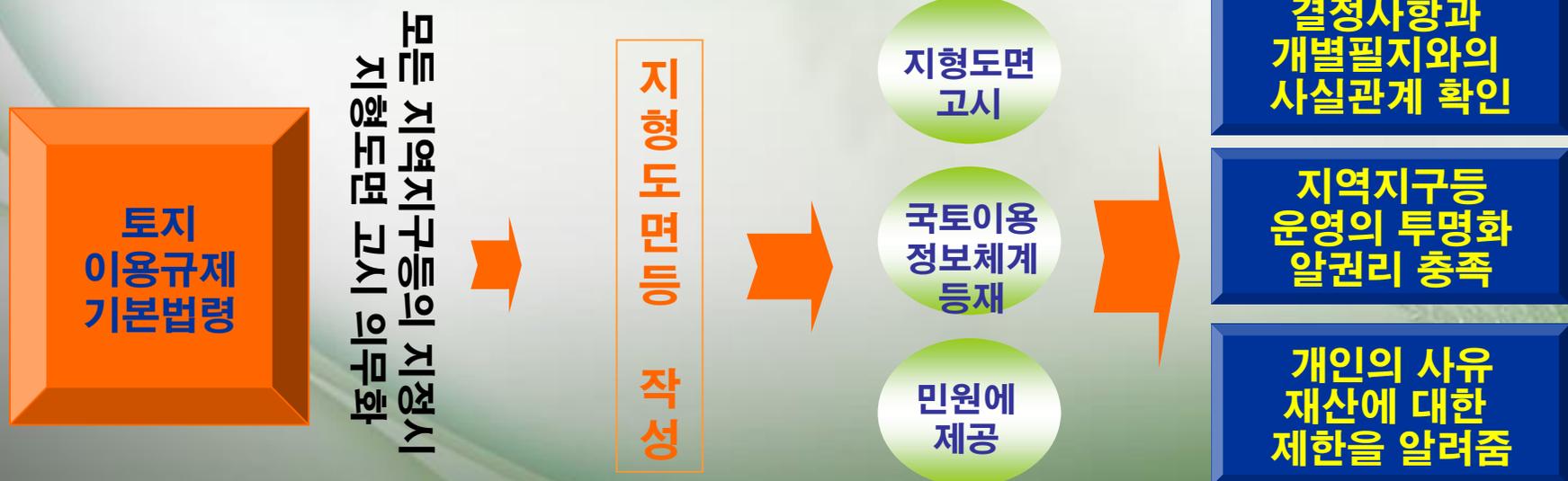
## 규제도면 작성 및 고시

### ● 법적 근거

- '05.12.7 토지이용규제기본법령 제정, 지역지구 지정시 지형도면 고시 의무화
- 지형도면 고시내용은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됨과 동시에 민원에 제공

### ● 지형도면등 작성의 필요성

- 지역·지구등 결정사항과 개별필지와의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하여 작성
- 지역·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 충족
-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사항을 알려줌



##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10년마다 타당성조사,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고시 등 법률적 의무사항 이행
- 산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계되는 각종 산지 용도별 규제도면 전산화 구축
- 산지 관리의 합리적 업무 수행과 관리자의 정책결정 지원

##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산지관리정보화사업
- 사 업 기 간 : 2005 ~ 2007년
  - 2005년 : 산지구분타당성조사 및 기초자료 수집 ( 시·군·구 및 관리소 )
  - 2006년 : 산지구분도 DB 구축 (조달계약, SK C&C 컨소시엄)
  - 2007년 : 산지구분도 제작 및 산지관리정보시스템 개발 추진
    - ※ 시·군·구 및 관리소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필지별 확인 추진

## 산지구분도 전산화 추진 상황

### 2005년 ~ 2006년

- 산지구분타당성조사 자료 수집
  - 법정림에 대한 현황자료
  -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현황자료
- 산지구분전산화 및 DB구축

### 2007년

- 산지구분도 전산화 용역사업 추진
  - 전산화 결과에 대한 확인 등 실시
- 산지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
- 소요예산 : 약 20억

## 산지구분도 전산화 내용

- 산지구분타당성조사에 따른 산지구분 조정 반영(산지관리법)
- 산지 용도별 규제도면 작성 . 지적기반 지형도면 작성(토지이용규제기본법)
  - 한국토지종합정보망(KLIS) 구축자료 활용(용도지역·지구도, 연속지적도 등)
- 보전산지관리, 산지전용, 토석채취,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관리 등을 위한 산지관리정보시스템 개발

# '97년 작성한 산지구분도

[별지 제22호서식] (앞 쪽)

토지이용계획확인서

처리기관: 1일

신청인: ) 시·도, 지방산림관리청 ( )

| 읍(면) | 리(동) | 지번  | 지적      | 계         |
|------|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인제   | 소계   |     |         | 1,367,994 |
|      | 가리산  | 산2  | 37.190  | 37.190    |
|      |      | 산4  | 16.760  | 16.760    |
|      |      | 산6  | 32.331  | 32.331    |
|      |      | 산7  | 34.010  | 34.010    |
|      |      | 산8  | 16.264  | 16.264    |
|      |      | 산9  | 28.060  | 28.060    |
|      |      | 산10 | 14.719  | 14.719    |
|      |      | 산11 | 44.026  | 44.026    |
|      |      | 산12 | 24.496  | 24.496    |
|      |      | 산13 | 31.636  | 31.636    |
|      |      | 산14 | 35.209  | 35.209    |
|      |      | 산15 | 36.298  | 36.298    |
|      |      | 산16 | 122.969 | 122.969   |
|      |      | 산17 | 35.504  | 35.504    |
|      |      | 산22 | 46.245  | 46.245    |
|      |      | 산23 | 69.222  | 69.222    |
|      |      | 산26 | 62.777  | 62.777    |
|      |      | 산27 | 26.083  | 26.083    |
|      |      | 산28 | 44.719  | 44.719    |

| 대상지              | 토지소재지            | 지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목   | 면적(m <sup>2</sup> )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확<br>인<br>내<br>용 | 1 도시관리계획         | 용도지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용도지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용도구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도시계획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지구단위계획구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발원두관리구역( ) 기반시설부담구역( )<br>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( ) 도시개발구역( )<br>재개발구역( ) 도시계획입안사항( )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확<br>인<br>내<br>용 | 2 군사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군사시설보호구역( ) 해군기지구역( ) 군용항해구역( )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 항공기구역( ) 비행안전구역( ) 기지보호구역( )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3 용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용지보호구역( ) 용지보통구역( )  |                     | 해당없음( )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4 산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보전임지[생산( )·공익( )]  |                     | 해당없음( )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5 자연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원구역( ) 공원부속구역( )  |                     | 해당없음( )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6 수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수원보호구역( )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( )   |                     | 해당없음( ) |
| 7 하천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하천구역( ) 하천예정지( ) 연안구역( )               |  | 해당없음( )             |         |
| 8 문화재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문화재( ) 문화재보호구역( )                      |  | 해당없음( )             |         |
| 9 전원개발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전원개발사업구역[발전소( )·변전소( )]                |  | 해당없음( )             |         |
| 10 토지거래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허가구역(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해당없음( )             |         |
| 11 개발사업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택지개발예정지구( )<br>산업단지[국가( )·지방( )·농공( )] |  | 해당없음( )             |         |
| 12 기타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  | 해당없음( )             |         |
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을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
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사항을 위와 같이  
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 인

수 수 료  
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
로 정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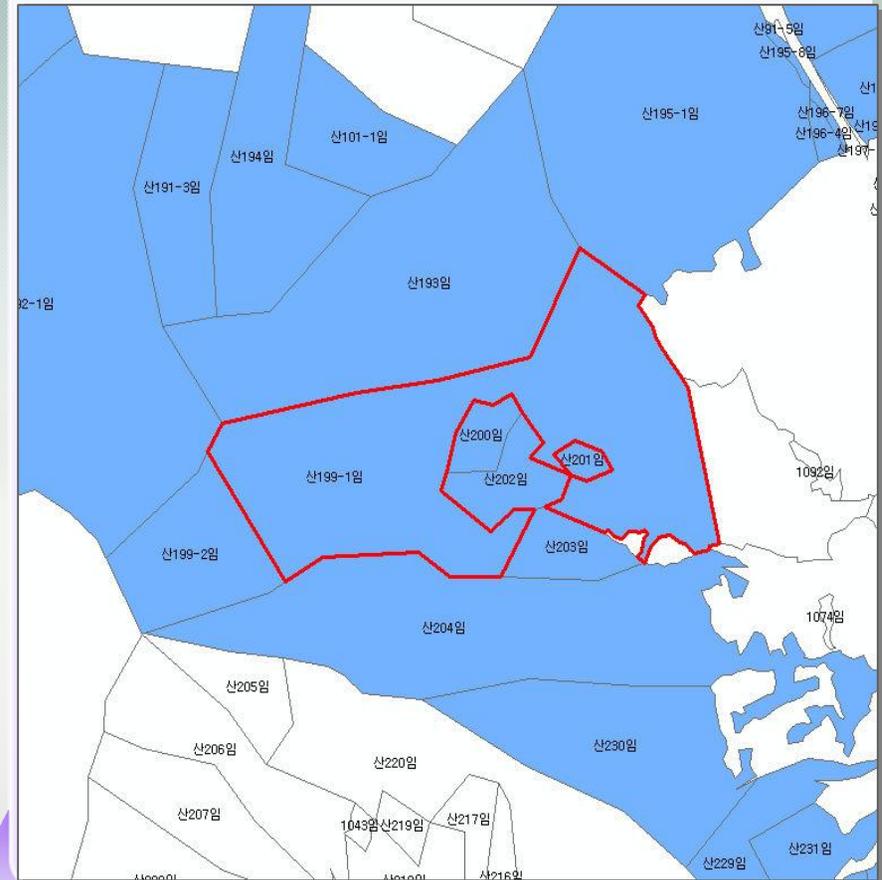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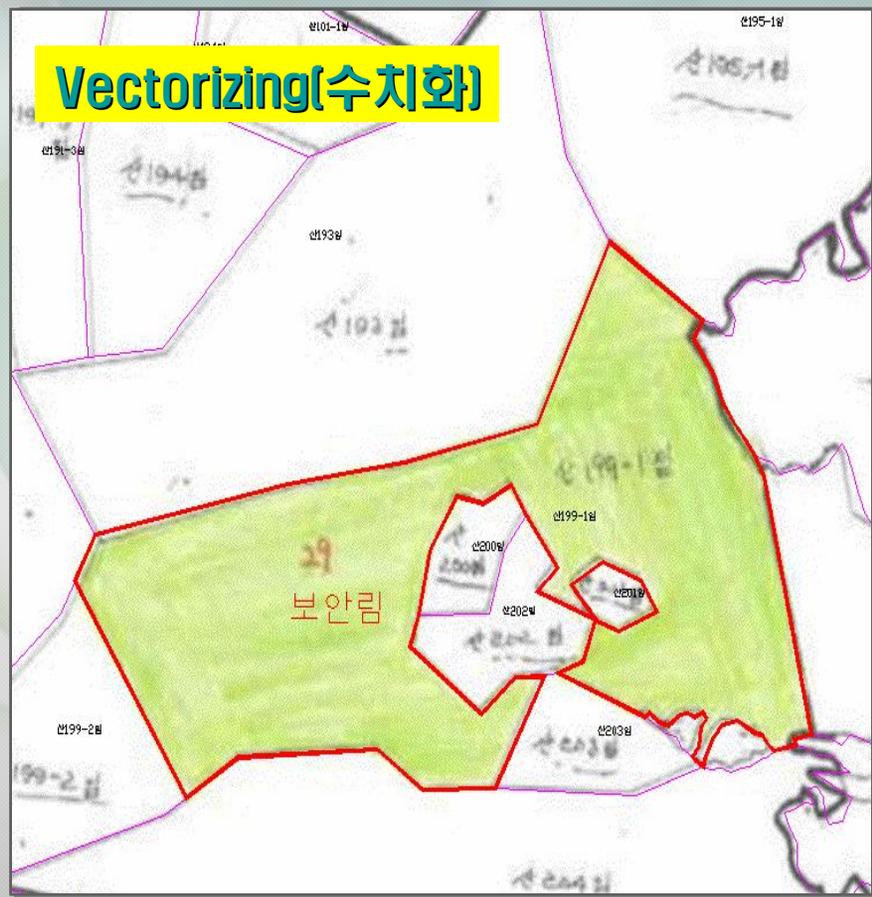
원 조 수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사방지 기타 비고

7,4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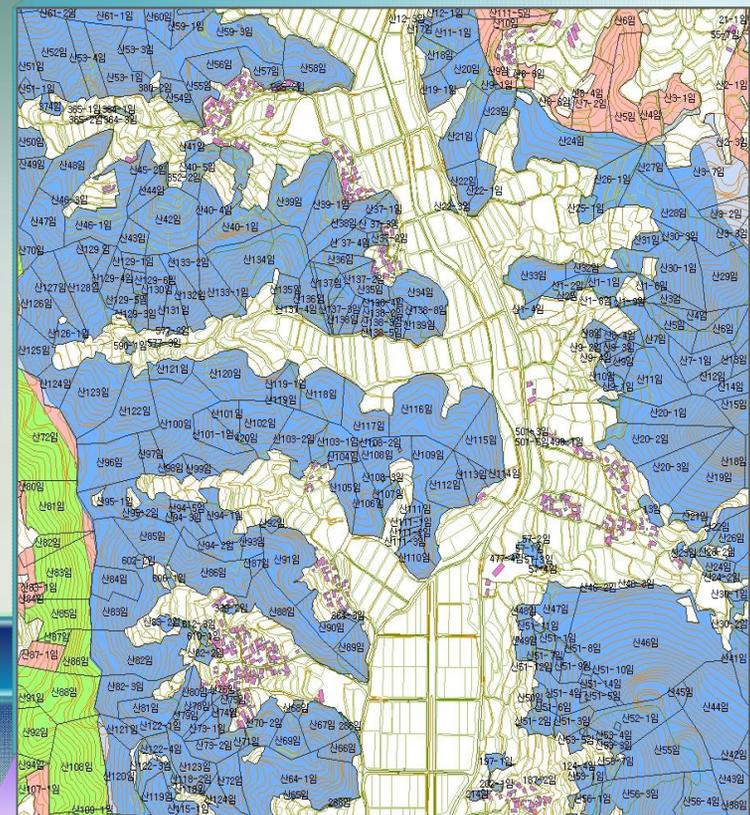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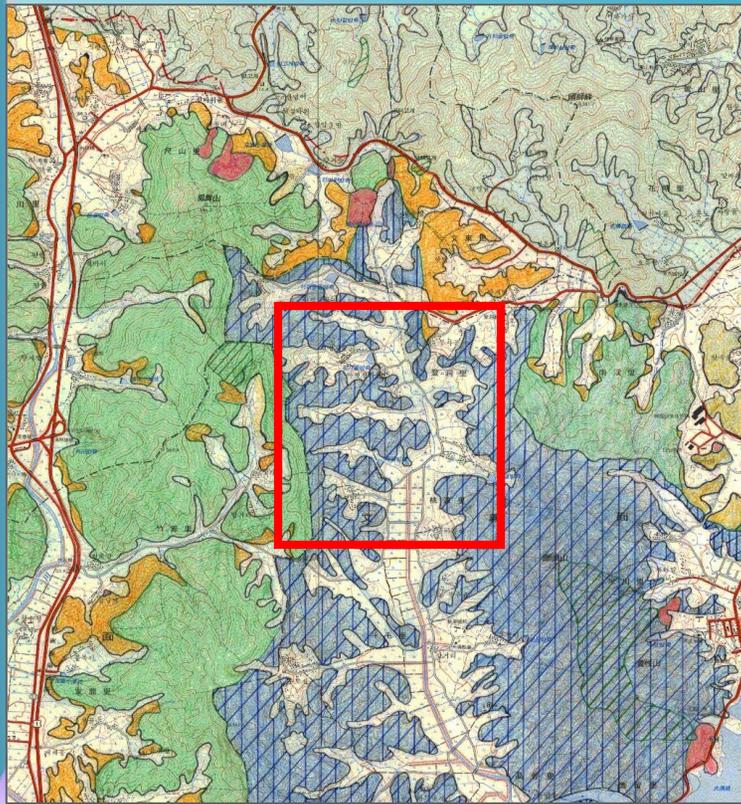
210 × 297mm(보존용지(2종) 70a/m<sup>2</sup>) 또는 전자용지 500×260mm(인쇄용지(특급) 1008

자별 우선순위에 따라 중복면적은 난의 상단부( )내에 기재하고, 하단부에 중복되지 않은 실면적을 기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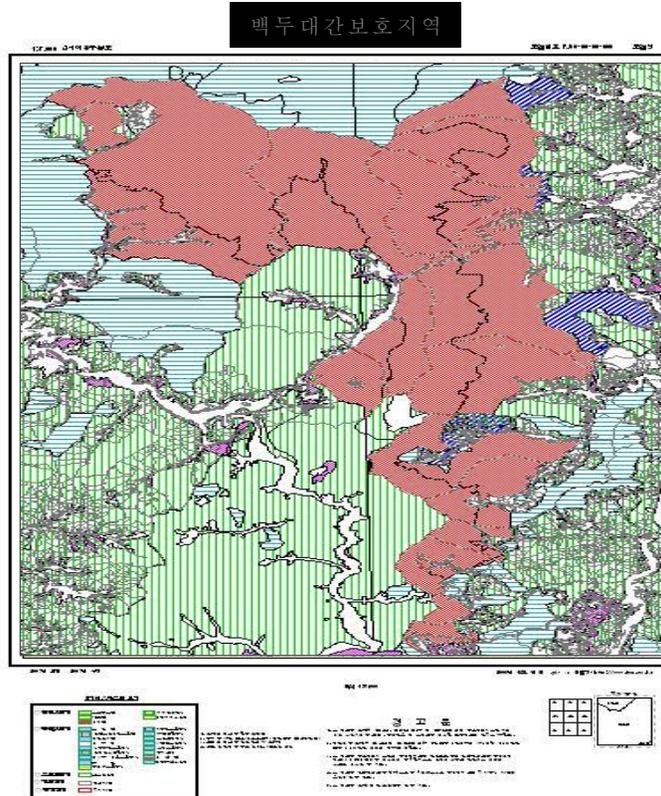
# GIS 기법을 활용한 산지구분도 전산화 작성



# 연속지적 기반의 대축척 도면 작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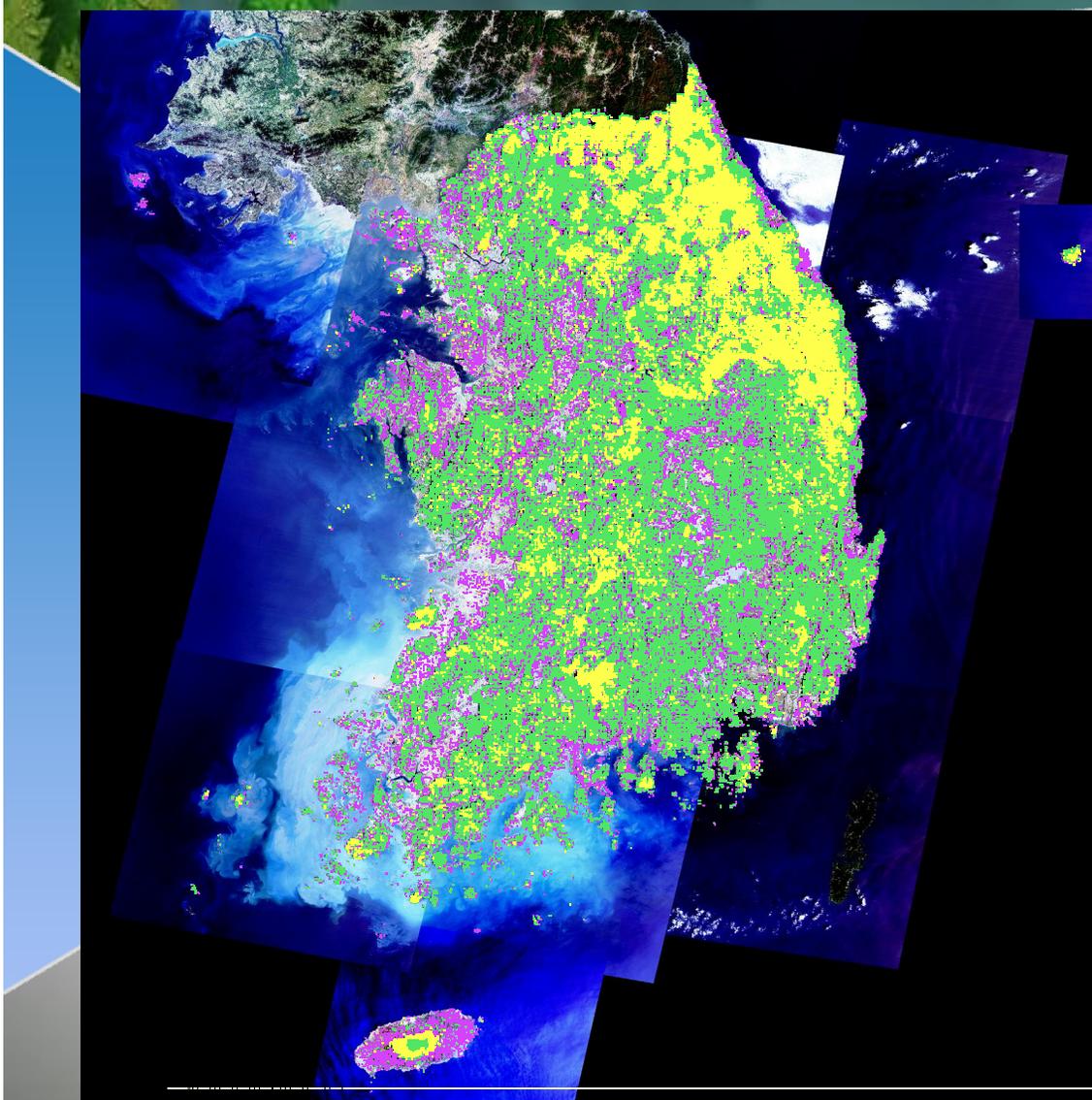
## ❖ 산지관련 법령에 규정된 규제관련 도면 작성



-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의무 대상 자료
- '07년 산림관련 도면의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가능
- 추가 예산 소요 없는 일괄 구축

백두대간보호지역 / 임업진흥권역 / 자연휴양림 / 보안림 등 9종

## ) 작성 결과



### ● 도면 현황

- 기존 1/25,000 : 793도엽
- 신규 1/5,000 : 22,095도엽

### ● 임지현황 (2006.12월 현재)

- 임야필지 : 2,524천 필지
- 토지임야 : 1,338천 필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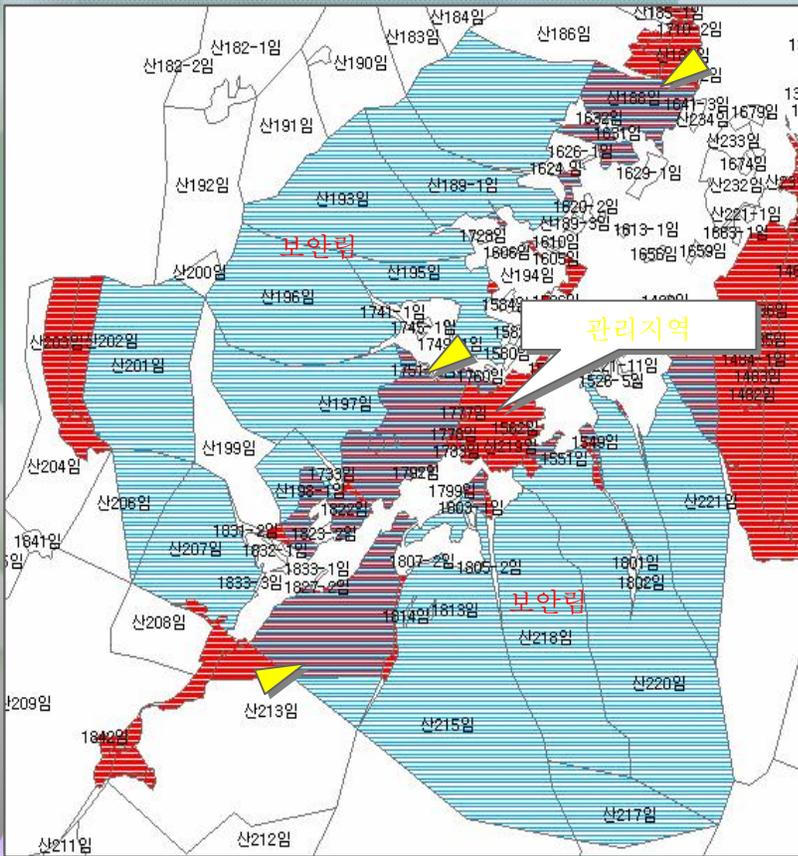
### ● 산지현황

- 보전산지 : 5,075천ha
- 준보전산지 : 1,515천ha

### ● 보전산지 현황

- 임업용산지 : 4,032천ha
- 공익용산지 : 1,043천ha

## ❖ 종전 산지구분도의 문제점 개선 및 여건변화 반영



### 필지기반 대축척도면기반 산지구분

- ❖ 종전 1/25,000 축척의 산지이용구분도 1ha 미만 소면적 표기 불가 (도면상에 지번표기 없음)

### 산지이용구분의 일관성 확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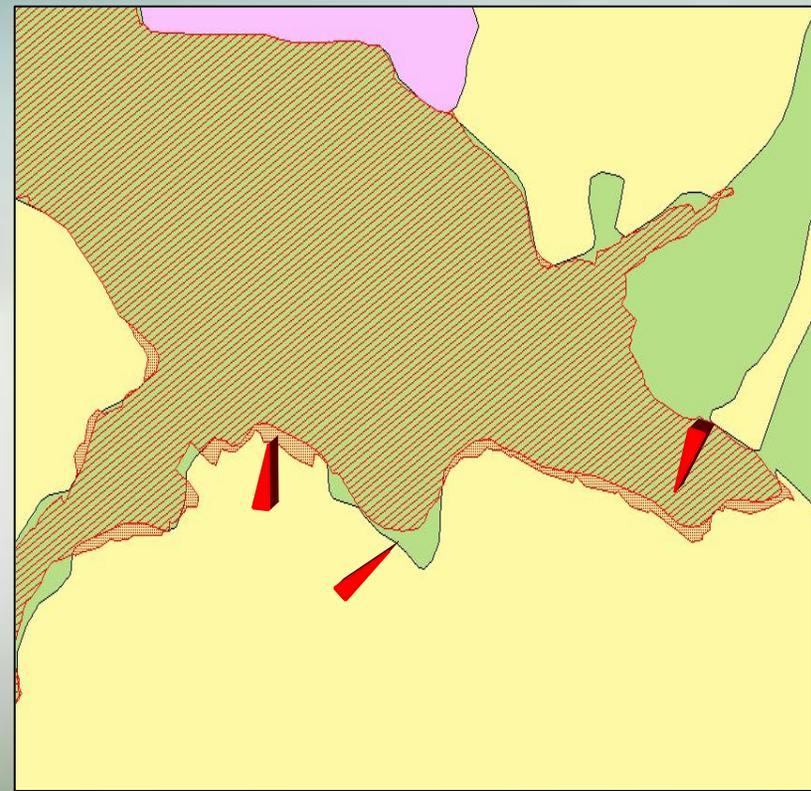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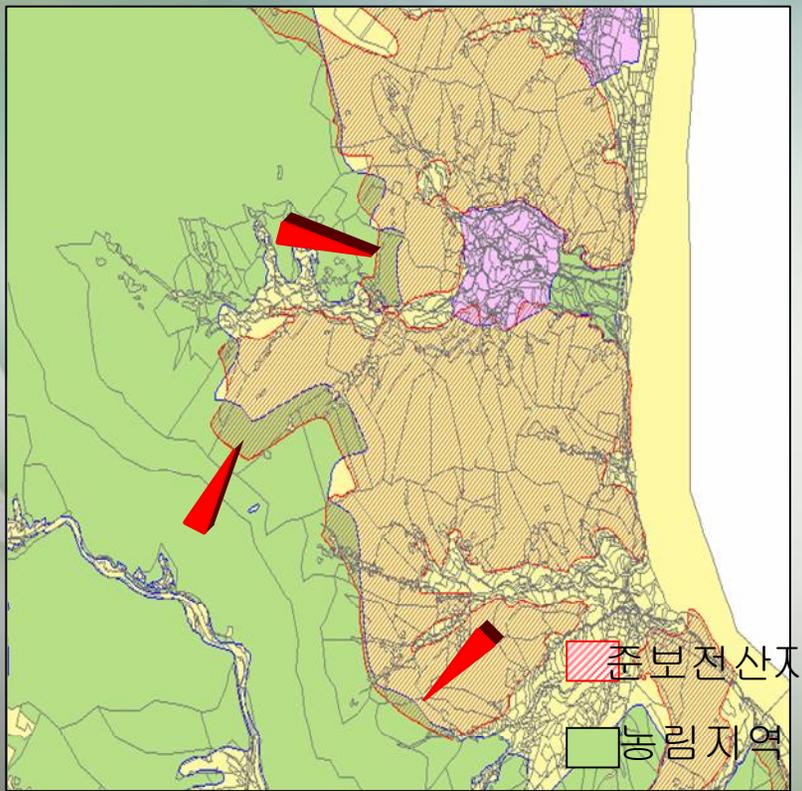
- ❖ 지형도와 지적도, 타 용도지역지구간 불부합
- ❖ 산지구분 부정확으로 분쟁 및 민원발생

### 국토이용정보체계 연계

- ❖ 고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정 후 2년 이내 지적고시 의무화 (2년 경과 후 자동 실효)
- ❖ 지적고시 내역의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및 전자적 민원 발급 의무화 (2009.1.1 시행)

## 불부합 사례 발생

- 산지구분도와 산지구분대장과 불부합 발생
- 산지관리법상 산지구분과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간 불부합 발생
- 기 발급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문제 대두





## II. 예상되는 주요쟁점 및 해결방안 검토

## 소축척 지형도에 수작업 산지구분 표시로 정확성 및 관리상 문제 내포

- 일반인이 산지구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신청 산지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도면만으로 확인 불가
- 따라서 산지구분도와 대장을 동시에 확인하여 발급하여야 하나, 민원발급 부서(시군 민원실)에서는 비치된 대장만 확인한 후 민원 발급하는 실정임

##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을 위해 1/25,000 산지구분도에 1/6,000임야도를 일치시켜 지번별 보전산지 표시 및 면적 구적 과정에서 오차 발생

- 오차가 발생한 도면을 토대로 면적을 계산하거나, 격자판으로 면적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착오 발생
- 잘못된 면적을 그대로 산지구분대장에 기록하고 민원발급 등에 활용

## 산지 소유자 등의 산지 구분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이해관계 참여

- 산지개발 수요가 증가 하고 있어 산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산지구분에 대한 관심 증대
- 산지구분은 해당 산지의 가격, 개발 가능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다수 산주들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길 희망

‘97년 고시한 산지구분도의 산지구분이 사실과 다르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위치가 바뀌었거나, 준보전산지 면적이 누락 또는 축소

## 산지이용 수요전망 및 사회·경제적 여건

- 토지이용확인서 발급 및 각종 인·허가에 활용한 산지구분대장과도면이 상이한 경우 처리방안
- 도로개설 및 개발 등으로 보전산지 주변이 변화된 여건 변화
- 농경지, 택지 등 산지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여건 등

## 지자체 개발 여건을 고려한 산지구분 조정 요구

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발수요 등의 여건 등을 이유로 산지구분 조정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검토필요



# Ⅲ. 도면 정비 후 기대효과

## 산지구분에 대한 정확도/정밀도 제고

- 산지이용구분의 정확도(1/25,000 ▷ 1/5,000) 및 정밀성 제고(필지기반)
- 산지이용구분의 신뢰성 제고 (중전 1ha이상면적 ▷ 전 임야필지로 확대)



민원  
최소화

- 자료갱신의 간소화, 자료 공유의 용이성 증대로 효율적 자료관리 가능
- 전용 가능지 판단 등 신속한 정보 분석으로 업무의 과학성, 적시성 제고



업무  
효율성 제고

- 연속지적 및 타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한 신속한 적용
- 산지이용구분도와 대장의 변경 관리 일원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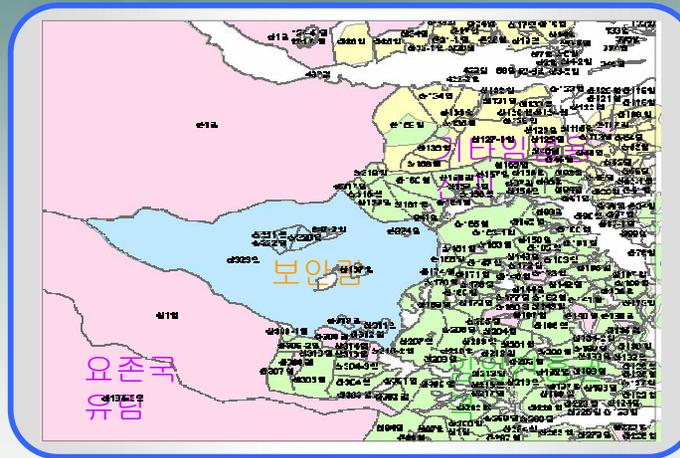
유지관리의  
일관성확보

# One-Stop 대 국민 서비스 기반 구축



한국토지정보시스템 (KLIS)

연속지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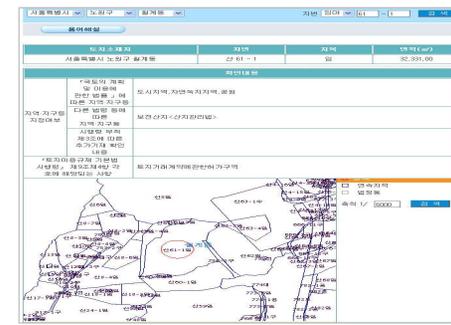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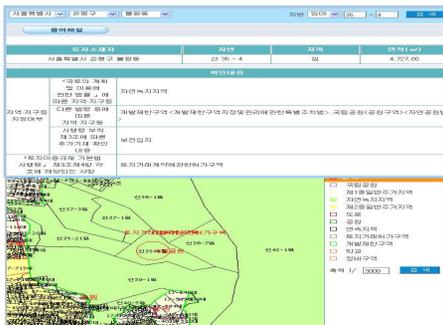


산지이용구분도



산지관리정보시스템

## 인터넷 토지정보 열람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가능



# 국토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





# IV. 향후 추진계획

## 산지구분 조정 지침(안) 마련

o 산지구분 조정(안) 마련 및 의견 조회

## 산지구분도(안) 확정 및 공람·공고

o 산지구분도(안)에 대한 시·군·구별로 공람·공고

- 공람(안)에 대한 반영여부 검토 및 이의신청: 공고 후 30일간

o 이의신청에 대한 반영 여부 검토 및 산지구분도 수정작업 실시

## 관계부처 협의 및 고시

o 건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

o 산지구분도 확정·고시

## 산지관리정보시스템 시범운영



*Your complimentary  
use period has ended.  
Thank you for using  
PDF Complete.*

[Click Here to upgrade to  
Unlimited Pages and Expanded Features](#)

감사합니다